

고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교육청의 지원)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제회 기금 조성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동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 ③(학교운영위원회 미구성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제3조의 구성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조직의 독립성 확보  
건의안

가. 관련법령 개정

- 소방관도 공무원인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대우로 사기를 꺾어서는 아니되므로 다음과 같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유사직종인 군인 또는 경찰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개정  
군인과 경찰은 전투·교육·훈련이나 사무실 등 직무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보훈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소방관은

화재·구급·구조현장에서 사망하여야만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중의 사망·상해도 보훈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립묘지령 개정

순직 후에도 군인 또는 경찰은 당연히 국립묘지안장 대상이나 소방관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사망한 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고, 교육·훈련 등 사망자는 제외되어 있어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

군인 또는 경찰은 공무상 요양비에 대해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도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고, 국·공립병원에 화상 등 특수진료과목이 없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반치료비만 보상받고, 화상·후유증 등 성형외과적 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화재진화시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화상 등 전문진료과목이 설치된 일반종합병원을 소방공무원 진료병원으로 지정하고,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승진·보수·근무여건 개선

○승진 불이익

일반행정직은 승진정체현상으로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함으로써 수당을 더 받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최저 승진소요 근무년수를 미적용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명예퇴직할 경우 최저 근무년수의 2/3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 및 수당의 차별

보수에 있어서 순경, 소방사 각 3호봉 기준을 비교할 때 경찰직은 월 162만 3천원이고, 소방직은 월 143만 3천원으로 19만원이 부족합니다.  
수당 역시 경찰관은 위험수당 2만원, 치안수당 17만원 등 39만원이나, 소방관은 위험수당 2만원, 화재진화수당 8만원 등 모두 20만원으로 19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 근무여건

경찰관인 경우 12시간 3교대로 주당 근무 시간은 56시간이나, 소방관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으로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를 느끼고 있으므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종류별정원정책기준규칙”에 의거 서울시는 소방공무원 정원을 교원과 함께 묶어 본청 정원의 27%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면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은 별도 정원 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소방청 설립은 모든 소방공무원과 소방관계인의 여망이자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도 광역소방자치가 이루어져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민방위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고,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제주 등에서는 민방위, 재난관리, 가스안전업무 등을 부분적으로 흡수 통합하였으나 중앙조직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산하에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국이 2원화되어 있어 소방조직의 독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선 소방총수를 책임자로 한 2개 기구를 통합하고, 이에 삼풍사고 및 고성산불 이후 신설된 재난관리기구를 흡수한 기구를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에 의한 정책수립과 일상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방청을 신설하여 민방위재난관리조직과 산불진화, 가스안전관리 기능 및 기구를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흡수하여 일상불란한 지휘체계 확립과 재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소방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소방관들의 손으로 조직과 인사,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용·편성할 수 있도록 의청의 형태인 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불평등한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독립된 의청으로서 소방청이 발족된다

면 소방공무원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어 모든 재난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2001.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패적인 환경보전과 감소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 및 촉구 결의안

오늘날 우리의 음식문화는 그 동안의 식생활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식단에서 많은 음식물이 남겨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남겨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할 경우에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 그리고 소각할 경우에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물질로 우리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오염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30%에 불과하여 매년 100억불 이상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연간 8조원 상당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그 처리비용으로 매년 4천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매립지 추가확보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할 때 남겨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서민생활의 가계와 국가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먹고 남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 국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며, 이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이러한 면을 쉽게 간과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패적인 환경보전과 감소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서울특별시민 여러분과 함께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